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가단1283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693,34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693,3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고종영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이고, 위 C 는 위 양수금 채무의 '채무자' 이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C 의 상속분을 사해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 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1) 소외 주식회사 E 은 2009. 07. 20. 소외 C 에게 금 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39.9%, 연체이자율 연 39.9%로 각 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신용대출신청서 참조).

그런데 위 C 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E 은 2011. 11. 17. 원고에게 C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이후 원고는 위 C 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가소206058), 2012. 5. 3.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2013. 8. 27. 소외 F 유한회사에게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나(갑 제2호증의 3, 4 각 자산양수도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원고와 위 F 사이의 환대약정D에 따라, 위 F는 2014. 3. 10.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3, 5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따라서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소외 C는 원고에게 금 20,693,341원 및 그 중 금 3,747,533원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2) 그러므로 후술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채권액인 20,693,341원입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소외 C의 아버지는 소외 망 G인데, 위 G는 2019. 2. 26.경 사망하였고, 위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상속인 G의 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위 G의 상속인들 및 C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1) 갑 제2호증의 3 자산양수도계약서 2쪽 중 제4조 (환대) 포함 참조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19. 2. 26.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대법원은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권리 포기’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자인 소외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전 부동산은 C의 재산인데, 위 C는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자력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위 분할협의는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하는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및 소외 C 사이의 2019. 2. 26.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인

2015. 7. 24. 접수 제99180호로 ‘채권최고액 2,4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 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갑 5 을구 5번 참조)

가 마쳐졌었으나,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19. 3. 8. 말소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따라서 본 사건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원물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2021. 6. 8.까지의 피보전채권액인 금 20,693,341원을 한도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1층, 2층, 지하 각 80.1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부천시 대 206.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벽돌조 35.4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06.4분의 34.4 분.

